

의안번호	2207681
의 퇴 인	배준영 의원
회 답 일	2024.11.28.
추 계 번호	24C499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0조의11 (통학지원)	(제1항)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u>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u> 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학지원 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u>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 (제3항)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u>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해당 시·도의 조례</u> 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0조의11 (통학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¹⁾
 -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 또는 통학비 지원

1)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 학생 통학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숙식비) 및 통폐합학교 지역 학생 하숙비 지원(강원 등), 학생성공버스 운영 및 위킹스쿨버스 운영 등(인천)²⁾, 농어촌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전북)³⁾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교육청도 있음

[표 1] 시·도교육청 통학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교육청	통학차량 또는 통학비 지원	근거(조례 등)
강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	지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경남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통학편의 지원 및 차량운영 지침
경북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대구	지원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대전	지원	제정 예정
부산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서울	지원예정 ¹⁾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세종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울산	지원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추진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남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전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충북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주: 1) 서울특별시(시·도)는 ‘공립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 시행 중

자료: 시·도교육청 제출자료(2024.11.기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의 추가나 국가

- 2) 학생성공버스는 개발지구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등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이 주관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위킹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위험한 등하굣길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동행하며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임
- 3)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교육청과 도청, 시군에서 사업예산을 분담

의 통학지원 대책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이 실시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 개정안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이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보다 강화하여 규정될 경우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사업이 실시될 수 있음
- 또한, 2024년 현재 ‘국가’의 통학 지원대책에 대한 경비 지원은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기존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규모, 신규사업의 구체적 내용, 국가의 지원비율 및 규모 등에 대한 추정에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